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72118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7211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가단933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김성구, 최영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석현

변론종결 2022. 4. 22.

판결선고 2022. 5. 2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가단933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8,4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5행의 ‘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감정의뢰회보(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를 근거로 충돌지점으로부터 피해자는 약 60m(58.85m) 뒤에 넘어져 있었는데, 피고차량의 정지거리(공주거리+제동거리)는 49m 정도였으므로, 피고차량이 비산물 발견 즉시 제동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이는 인지반응시간을 1초로 가정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인지 여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조향, 제동), 운전자의 시점과 인지반응 등은 주관적인 요소인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차량이 가사 비산물을 보았다 하더라도 즉시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철, 판사 송주희, 판사 박애경